



제429회국회(정기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외식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상한 도입 등〉
■ 김원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769호)

2025.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제안이유	1
2.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3
1. 외식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상한 도입 등	3
※ 참고자료	
1. 온라인플랫폼 수수료 관련 법률안 계류 현황(정무위원회)	1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원이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9. 8.
3. 회부연월일 : 2025. 9.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코로나19 이후 배달앱 등 외식중개플랫폼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해당 거래액이 급증하였음.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2020년 17조 3,371억원에서 2024년 36조 9,891억원으로 증가해 5년 새 시장 규모가 2.1배 성장했음.

그러나 배달앱 등에 입점한 소상공인은 높은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등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음. 플랫폼사들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과 지급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등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실제로 외식업 소상공인들은 중개수수료, 배달료, 각종 추가 광고

비 등을 포함하여 통상 매출액의 20% 내외를 플랫폼사에 지불하는 실정이라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음.

민간 주도의 배달앱 자율규제로는 중개수수료 문제 등 핵심 쟁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 소상공인 부담 경감과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규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예컨대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외식중개플랫폼의 서비스 이용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우대 이용료를 적용하여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함.

또한,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가 서비스 이용료의 조정 요구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시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외식중개플랫폼의 서비스 이용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우대 이용료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15조의8 신설).

나.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가 서비스 이용료의 조정 요구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시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 및 제31조 신설).

Ⅲ. 검토의견

1. 외식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상한 도입 등

개정안은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 이용료를 정하도록 하고, 이용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며, 영세한 이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우대 이용료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15조의8 신설).

그리고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5조의9 신설), 그러한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명하거나(안 제27조의2 신설),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음(안 제31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4. “외식중개플랫폼”이란 외식사업자로부터 이용대가를 받고 정보통신설비를 통해 구축된 전자적 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청약을 접수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5.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란 외식중개플랫폼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6. “이용사업자”란 외식중개플랫폼을 이용하는 외식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7. “외식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료”(이하 “서비스 이용료”라 한다)란 이용사업자가 외식중개플랫폼을 이용함에 따라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에 지급하는 금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설>	제15조의8(외식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①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료를 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의 범위 내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이용사업자의 서비스 이용료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이용료를 정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한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 우대 이용

<신 설>	료를 적용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의9(서비스 이용료의 조정 요구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5조의8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도록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27조의2(영업정지명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가 제15조의9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31조(과징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가 제15조의9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5년 3/4분기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69조 2,799억원으로, 상품군별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서비스(15.3%)¹⁾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²⁾ 이는 전 분기 대비 4.8%, 전년 동 분기 대비 8.4% 증가한 수치임.³⁾

배달앱 동향 조사⁴⁾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배달앱 순 결제추정 금액은 팬데믹 시기(2022년 3월)의 최고치인 2조 3,151억원에 근접한 2조 2,800억원 수준을 보이고 있고, 배달앱 이용자는 약 2,701만명, 배

1) 온라인 주문 후 조리되어 배달되는 음식(피자, 치킨 등 배달서비스)

2) 이어서 ‘음·식료품’(14.4%), ‘여행 및 교통서비스’(12.8%) 순으로 높음.

3) 국가데이터처, “2025년 9월 온라인쇼핑동향”, 2025.11.3.

4) 와이즈앱리테일, 2025.4.8.

달앱 결제자는 약 2,351만명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스마트폰 보유자의 절반 이상인 52.7%가 배달앱을 이용 중으로, 배달앱 결제자 1인당 월 평균 결제금액은 97,059원, 월평균 결제 횟수는 3.7회로 나타나고 있으며, 배달앱 4사 중 배달의민족 이용자가 2,238만명으로 가장 많음.⁵⁾

배달앱 순 결제추정금액 추이(2025년 3월 기준)



주) 만 20세 이상 한국인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한 금액을 표본조사(법인카드, 기업 간 거래, 현금, 상품권, 기프트콘, 간편결제 등을 통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음)
출처: 와이즈앱리테일(<https://www.wiseapp.co.kr/insight/detail/651>)

한편, 배달앱 등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하여 외식상품을 제공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또한 증가함에 따라, 플랫폼 수수료 및 광고료 등 비용 부담으로 인한 플랫폼 입점업체의 수익성 악화 및 상품가격 인상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⁶⁾

5) 이어서 쿠팡이츠(1,101만명), 요기요(504만명), 뽕겨요(153만명) 순임.

6) <관련 기사>

-아시아경제, “하루에 100마리씩 튀겨도 남는 게 없네…2만5000원 짜리 치킨값 대해부[치킨공화국의 몰락]①”, 2025.10.21.

아시아경제, “배달앱에 뜯기고 본사는 나몰라라…결국 폐업[치킨공화국의 몰락]②”, 2025.10.21.

아시아경제, “배달의 지옥에 빠진 치느님…4년새 ‘1만원’ 가격 인상[치킨공화국의 몰락]③”, 2025.10.22.

중소기업중앙회가 2025년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1,24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⁷⁾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상당수가 온라인플랫폼 이용 시 수수료 및 광고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수수료 상한제 등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응답자의 86.0%가 배달앱 이용 비용이 부담된다고 응답하였고, 가장 부담되는 항목으로는 ‘중개수수료’(54.0%)⁸⁾를 꼽았으며, 전반적 수수료율 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9%가 ‘총수수료 상한제로 수수료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2024년 7월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따라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⁹⁾가 출범하였으며, 2024년 11월 중개수수료 차등 인하 등이 포함된 최종 ‘상생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¹⁰⁾

아시아경제, “배달앱 독과점 그늘…”시장 질서 다시 짜야”[치킨공화국의 몰락]④”, 2025.10.23.
(URL: <https://view.asiae.co.kr/article/2025100212545130008>)

7) 중소기업중앙회 보도자료, “중기중앙회, 「2025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5.9.29.

8) 이어서 ‘배달비’(23.7%), ‘광고비’(11.1%), ‘결제대행수수료’(10.6%) 순임.

9) 상생협의체에는 주요 배달플랫폼 4개 사업자(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와 입점업체를 대표하는 4개 협회·단체(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가 참여하며, 총 16인의 위원이 주요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공익위원, 특별위원 각 4인 동수로 구성됨.

10) 관계부처합동 보도참고자료,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 개최”, 2024.7.23.
관계부처합동 보도참고자료,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중개수수료 인하 상생방안 마련”, 2024.11.14.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최종 상생방안(배달의민족·쿠팡이츠)

구간(거래액 기준)	중개수수료	배달비
현행	9.8%	1,900 ~ 2,900원
상위 35%	7.8%	2,400 ~ 3,400원
35 ~ 50%	6.8%	2,100 ~ 3,100원
50 ~ 80%		1,900 ~ 2,900원
하위 20%	2.0%	
적용기간	향후 3년간 (배달의민족 2025.2월부터, 쿠팡이츠 2025.4월부터 시행)	

출처: 관계부처합동 보도참고자료,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중개수수료 인하 상생방안 마련”, 2024.11.14.

그러나 동 상생방안에 대해서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일정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여전히 입점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부정적 의견이 병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¹¹⁾ 중소기업중앙회의 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0.9%가 상생협의체의 차등 수수료제 도입 방안이 ‘배달앱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음.¹²⁾

참고로, 배달의민족 수수료 정책 변화에 따른 입점업체와 소비자의 배달앱 이용료 부담에 대한 참여연대의 실태조사¹³⁾에 따르면, 일부 입점업체의 경우 상생협의체가 도출한 ‘상생요금’을 적용하더라도 총수수료(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배달비)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여 비용 부담 완화 효과가 없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외식물가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11) 최은진, “플랫폼 수수료 규제 관련 법률안의 현황과 쟁점”, 정보통신학회 기획세미나(‘디지털 플랫폼 규제에 대한 다자주의적 관점: 배달플랫폼 수수료 규제를 중심으로’, 2025.9.22.) 발표문

12) 중소기업중앙회 보도자료, “중기중앙회, 「2025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5.9.29.

13)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배달의민족 수수료 부담 실태보고서”, 2025.10.22.

개정안에 따라 외식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료의 상한 설정 및 영세한 이용사업자에 대한 우대 이용료 적용 제도가 도입되면, 배달플랫폼 입점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개정안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서비스 이용료 조정 요구, 영업정지 명령 및 과징금 부과 권한을 규정하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는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및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등을 규정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14)의 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¹⁵⁾

1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가맹점수수료율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8조의4(가맹점수수료율의 조정요구 등)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이 제18조의3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도록 요구하거나 관계 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7조(허가·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신용카드업자의 경우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제18조의4, 제23조제2항, 제24조·제25조제1항, 제53조제4항, 제53조의3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경우

제58조(과징금) ① (생략)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제5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대신에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5) 이와 관련하여,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신용카드업이 허가산업(8개사만 참여 중, 자본금 200억원 필요)이면서 국가적인 보호·장려 대상이었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플랫폼 산업에 대하여 경제적 분석 없이 수수료 상한제 등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산

다만, 개정안 심사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감안한 논의도 필요해 보임.

우선, 개정안의 취지는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을 과도한 이용료 부담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개정안에 따른 외식중개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반드시 소상공인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¹⁶⁾ 및 적용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행 법체계와의 부합 여부에 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과의 규율범위 중복 소지를 고려할 필요도 있어 보임.

다음으로, 현재 국회 차원의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가 발족하여 배달플랫폼 수수료 문제를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는 상황이고,¹⁷⁾ 수수료 상한제 등 ‘억제형 규제’가 아닌 시장의

업혁신을 저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1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7) <관련 기사>

-뉴스핌, “온플법 좌초 뒤 새판 짜기...’사회적 대화+입법 규제’로 배달앱 정조준”, 2025.9.1.

자율 경쟁을 복원하는 ‘설계형 규제’로의 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므로,¹⁸⁾ 가격규제에 따른 공급축소 및 품질 저하에 따른 소비자 후생 감소 등 부작용 발생 우려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방안 도출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¹⁹⁾²⁰⁾

마지막으로, 배달플랫폼뿐만 아니라 전체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수수료 규제와 관련된 여러 법률안이 발의되어 정부위원회에 계류 중인 바(참고자료 1),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포함하는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 및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규제에 관한 다른 법률의 제·개정 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는 소상공인을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것이나, 개정안은 소상공인이 아닌 모든 입점 사업자를 포함하고, 소상공인이 아닌 대상(플랫폼)에 대한 규제 도입을 규정하여 동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임.

(URL: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901000873>)

18) <관련 기사>

-아시아경제, “배달앱 독과점 그늘…” 시장 질서 다시 짜야 “[치킨공화국의 몰락]④”, 2025.10.23.
(URL: <https://view.asiae.co.kr/article/2025100212545130008>)

19) <관련 기사>

-아시아경제, “‘주문 3억건 줄어들 것’… ‘75%가 싫어요’ 배달 수수료 상한제 해결 골목”, 2025.10.13. (URL: <https://view.asiae.co.kr/article/2025101015430767807>)

-이데일리, “학계서도 잇단 ‘경고’…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의 ‘역설’”, 2025.10.1.

(URL: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929446642328656&mediaCodeNo=257>)

20) 다만,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어 배달앱 분야의 자율규제 도입이 실패했으므로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법적·제도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음(참고자료: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배달의민족 수수료 부담 실태보고서”, 2025.10.22.).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앱 이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수수료 상한제 도입 방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바, 수수료 상한제는 가격규제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할 필요가 있고, 일반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도입될 경우 배달앱 외 다른 분야 플랫폼으로 가격규제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정부가 수수료 상한과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사업자의 가격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가격개입으로, 사업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장경제 원리에 배치된다는 입장임. 그리고 수수료 규제 사항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두는 것은 법체계 및 부처별 소관 사무에 부합하지 않으며, 플랫폼은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규율 대상이므로 새로운 규제 신설은 기업활동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65

【참고자료】

1	온라인플랫폼 수수료 관련 법률안 계류 현황(정무위원회)
---	--------------------------------

의안 번호	의안명(발의자)	제안일자	주요내용
2202983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20인)	2024-08-20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 상한의 범위 내에서 중 개수수료율을 정하며, 이용자단체 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한 경우 응할 의무를 부여
2204777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58인)	2024-10-18	온라인 플랫폼 중개수수료율의 차 별금지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온 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의 중 개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대 통령령으로 정한 상한의 범위 내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 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중개수 료율을 차별하여서는 안 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 의 영세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가 고시로 정하는 우대수수료 율을 적용하도록 함.
220592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9인)	2024-11-27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수행하는 통신판매 중개자들에 대하여 중개수수료 상 한제를 도입하고, 거래 상대방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 설하여 과도한 수수료 부과를 방 지
2211738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 (윤종오의원 등 15인)	2025-07-25	온라인 플랫폼 중개수수료율의 차 별금지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온 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의 중 개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대 통령령으로 정한 상한의 범위 내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 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중개수수 료율을 차별하여서는 안 됨.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 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안 번호	의안명(발의자)	제안일자	주요내용
			고시로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중개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고시하여야 함.
2213454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1인)	2025-10-02	-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의 상한을 정하고 영세·중소 입점업체에 대하여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중개수수료나 배달비 등 제한 기준의 위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하여 매출액의 3%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22135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등 13인)	2025-10-10	-배달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배달비·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의 합계가 해당 주문에 따른 매출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수료 또는 광고비의 부담 전가 및 수수료 인상분의 소비자 가격 이중 전가를 금지함.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플랫폼사업자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가격 인하, 행위 중지, 시정명령 공표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플랫폼사업자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매출액의 6%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